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검 토 보 고

■ 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207713호)

2025. 2.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개요	4
2. 국회 비준동의 사유	7
3. 주요 내용 검토	9
4. 종합의견	19
※ 참고자료	20
1. 우리나라 이중과세 방지동의안 체결 현황	20
2. 안도라 개황자료	24
3.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약 중 조세 징수 협조 규정	25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일자 : 2025년 1월 22일
3. 회부일자 : 2025년 1월 23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이 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동일한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와 안도라공국의 과세권 경합을 조정함으로써 양국 국민·기업의 이중적인 조세 부담을 방지하여 양국 간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약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탈세 및 조세 회피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협약의 적용 대상인 소득에 대한 조세는 총소득 또는 소득 항목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의미함(안 제2조).

나. 이 협약이 적용되는 소득은 부동산소득, 사업 이윤, 국제 해운 및 항

공 운송 이윤, 배당, 이자, 사용료, 양도소득, 근로소득 등과 그 밖의 소득으로 하고, 대상 소득별 과세 원칙은 다음과 같이 함(안 제6조부터 제20조까지).

-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얻는 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안 제6조).
-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함(안 제7조).
- 3) 국제운수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한쪽 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함(안 제8조).
- 4) 배당, 이자 및 사용료는 그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는 제한세율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5) 부동산 양도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안 제13조).

다.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보다 불리한 과세를 부담하지 않음(안 제22조).

라.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규정의 이행과 관련이 있거나 양 체약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함(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예산조치 : 별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다. 체결경위

- 2022. 12. 문안 교섭 개시
- 2023. 9. 최종 문안 합의
- 2023. 10. 17. 제43회 국무회의 심의
- 2023. 11. 3. 서명(안도라 라 베야)
- 2024. 10. 22. 제45회 국무회의 심의

Ⅲ. 검토의견

1. 개 요

가. 이중과세 방지협약(협정)의 의미

우리 기업이 투자를 위해 해외에 진출하여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와 투자유치국에서 동일 소득에 대하여 각각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함에 따라 투자진출자 입장에서는 이중과세의 부담이 발생함.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이하 “이중과세 방지협약”이라 함)”이란 투자를 실시하는 거주지국(居住地國)¹⁾ 및 투자를 유치하는 소득원천지국(所得源泉地國)²⁾의 과세권 경합을 조정하여 동일한 소득이 양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2025년 2월 기준 우리나라는 이번에 제출된 안도라를 포함하여 99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가운데 96개국에서 협약이 발효 중임³⁾.

1) 투자자의 주소가 있는 본국

2) 투자의 소득이 발생하는 당사국

3) <참고자료 1> 참조(20쪽)

나.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유형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유형은 거주지국(居住地國)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OECD 모델협약”과 소득원천지국(所得源泉地國) 과세주의를 강화한 “UN 모델협약”으로 구분됨.

OECD 모델협약은 주로 선진국인 투자국의 입장에서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완화한 것이 특징인 반면, UN 모델협약은 주로 개발도상국을 위한 모델로서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한 것이 특징임.

일반적으로 선진국인 자본수출국은 전자를, 자본수입국인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세수확대를 위해 후자의 유형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제적으로는 투자국 과세원칙인 OECD 모델협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양자 간 이중과세 방지협약 체결 시 주로 OECD 모델협약을 준거로 삼고 있음.

다.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의 개요

안도라와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는 2023년 기준 수출 약 4.9만불, 수입 약 6.5만불이며, 2022년 기준 투자 현황은 없는 상황으로, 양국의 경제적 교류가 크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양국 간 경제교류 촉진 및 향후 무역과 투자의 확대 가능성에 따른 분쟁 대비 등을 위하여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존재함.

이에 정부는 2022년 12월 제1차 협상, 2023년 3월 제2차 협상 개최 및 실질사항에 대한 합의 후 2023년 9월 최종 문안에 합의하였음.

<한-안도라 이중과세 방지협약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고정사업장 판정기준	- 고정사업장 예시: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천연자원 채취장소, 농업·목축업·임업 수행장소 - 건축현장, 건설, 설치 공사: 12개월 초과 - 종업원 등을 통한 용역 제공: 규정 없음
부동산 소득	-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허용
사업소득	-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에 한해 고정사업장 소재지국과세 허용
국제운수 소득	- 국제운수기업 거주지국 배타적 과세
배당	- 소득 원천지국 과세 허용 (제한세율*: 법인간 5%, 기타 10%) * 소득원천지국에서 적용가능한 최대 세율
이자	- 소득 원천지국 과세 허용 (제한세율: 금융기관 5%, 기타 10%)
사용료	- 소득 원천지국 과세 허용(제한세율: 5%)
양도 소득	- 부동산 주식·과점주주(보유지분율 50% 이상) 주식: 소득 원천지국 과세 허용 - 기타 주식: 거주지국 배타적 과세
근로소득	- 일정요건 충족시(183일 이상 체류 등) 근로수행지국 과세
기타 소득	- 거주지국 과세 (단, 고정사업장 관련 소득은 원천지국 과세 허용)
이중과세 제거	- 세액공제방식
상호합의절차	- 납세자가 조세조약에 위반한 과세사안에 대해 이의제기시 양 과세당국간 상호합의로 해결
정보교환	- 양 과세당국은 조세조약 이행 및 각국 세법 집행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교환
혜택의 제한	- 조약 혜택 향유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혜택을 부인

2. 국회 비준동의 사유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4)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한-안도라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경우, 국내법인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하는 효과를 초래함.

예컨대, 한-안도라 이중과세 방지협약 제10조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거주지국이 다른 쪽 계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때 배당 총액의 5퍼센트 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19조제2호 및 제156조제1항제2호는 비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20퍼센트의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3조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에서도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20퍼센트의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한-안도라 이중과세 방지협약 제11조는 이자소득의 발생지국

4) 「대한민국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 다른 쪽 계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자 총액의 5퍼센트 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및 제156조제1항제1호는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그 종류에 따라 14퍼센트 또는 20퍼센트의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및 제98조제1항제1호에서도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14퍼센트 또는 20퍼센트의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한-안도라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국내법인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부가 동 협약을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 판단하여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3. 주요 내용 검토

가. 대상 조세 및 거주자 (안 제2조 및 제4조)

동의안 제2조에서는 적용 대상 조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총소득 또는 소득 항목에 대하여 부과하는 모든 조세에 대해 적용됨.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가, 안도라의 경우 법인세, 개인소득세, 세무상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조세를 대상으로 함.

동의안 제4조는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를 “그 체약국 법에 따라, 그 인의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그 밖의 기준을 이유로 그 체약국에 납세 의무가 있는 인”으로 규정함.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이중거주자)인 경우, ① 항구적인 주거지, ② 인적·경제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지, ④ 국적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판단하며, 이러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양 과세당국이 상호 합의하도록 함.

나. 고정사업장 및 사업이윤(안 제5조 및 제7조)

1) 고정사업장의 정의 및 범위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이란 이중과세방지조약에서 소득원천지국과 거주지국 간의 과세권을 배분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 본질적으로 두 나라 중 어느 나라가 기업의 사업소득 과세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개념임. 다국적기업이 소득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원천지국의 과세권이 인정됨.

동의안 제5조는 고정사업장의 예시로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천연자원 채취장소, 농업·목축업·임업 수행장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OECD 모델협약과 일치함.

또한 건축현장, 건설 또는 설치 공사의 고정사업장 판단 기준을 12개월로 규정하여, 건축현장, 건설 또는 설치 공사가 12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보도록 함.

2)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방지 규정

동의안은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OECD 모델협약의 규정을 반영하고 있음.

인위적인 사업 분할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여러 개의 법인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개별 활동으로 보면 고정사업장의 요건을 충

족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활동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면 이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것(안 제5조제5항), 외형적으로 독립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만을 위하여 전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을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종속대리인으로 간주하는 것(안 제5조제7항) 등임.

동 규정들은 다국적 기업의 단순 법적 구조 변경을 통한 조세 회피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됨.

3) 고정사업장과 사업 이윤

동의안은 기업의 이윤에 관하여 그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만, 다른 쪽 계약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소득원천지국)에서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것이 소득원천지국에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임.

다.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동의안은 배당·이자·사용료⁵⁾ 등 투자소득은 거주지국 과세를 원칙

5)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및 기타 노하우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으로 하되, 소득원천지국에서도 제한세율⁶⁾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제한세율은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와 ‘적정 조세수입의 확보’라는 상호 상반된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개발도상국(소득원천지국)과 자국 기업의 대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선진국(거주지국)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며, 저율 과세를 통하여 국가 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동의안은 국내 세법에 비하여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하여 모두 낮은 제한세율을 규정하였음. 제한세율은 배당과 이자는 5~10%, 사용료는 5% 수준임.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사용료의 경우 OECD 모델협약은 거주지국 배타적 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의안에서는 5%의 제한세율로 원천지국에서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료에 대하여 원천지국에도 과세권을 인정한 UN 모델협약의 규정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생각됨.

6) 제한세율이란 투자유치국(소득원천지국)이 투자국 투자자의 투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세율의 최대한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해 적용되고 통상 자국세법상 과세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됨.

<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원천지국 기준) >

구 분	한-안도라	국내세법	OECD 모델협약
배 당	법인간: 5% 기타: 10%	20%	법인간: 5% 기타: 15%
이 자	금융기관: 5% 기타: 10%	20% (채권이자소득 14%)	10%
사용료	5%	20%	0%

라. 양도소득 및 근로소득(안 제13조 및 제14조)

동의안은 양도소득과 근로소득에 관하여 OECD 모델협약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되는 대상에 따라 과세 권한이 상이함. ① 부동산의 양도, ②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 ③ 주식이나 신탁 등의 지분의 가치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가치가 소득원천지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로부터 얻는 소득의 경우 소득원천지국의 과세를 허용함. 그 밖의 소득은 거주지국에서만 배타적으로 과세할 수 있음.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원천지국(근로를 수행하는 국가)의 과세를 허용함. 다만, 183일 이하 체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거주지국에서만 배타적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마. 연금

OECD 모델협약은 연금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배타적인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세법은 연금 적립시점과 연금 투자시점에는 비과세하고 연금 수령시점에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동의안은 일정한 경우 연금의 지급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실제로 한국이 타 국가와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협정에서도 연금에 대해서는 지급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음.

다만, 최근 체결하였던 이중과세 방지협정들이 공적연금에 대하여 지급지국에 배타적인 과세권을 인정하였던 것과 달리, 동의안은 거주지국에도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연금 과세권에 관한 규정>

한-안도라	한-르완다	한-타이페이
그러나 그러한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다음의 경우 다른 쪽 계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나. 한쪽 계약국이나 그 지방당국의 사회보장 체계의 일부인 공공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계약국이나 그 지방당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인 공공 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과 그 밖의 지급금은 그 한쪽 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영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인 공공제도에 따라 지급된 연금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한쪽 영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바. 이중과세의 방지(안 제21조)

OECD 모델협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소득 면제방식(Exemption Method)과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Credit Method)을 제안하고 있음. 외국소득면제방식은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아예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거주지국의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임.

우리 세법은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동의안은 이를 반영하여 한국 거주자가 안도라에서 납세한 경우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서 안도라에서 납세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사. 정보 교환(안 제24조)

정보교환에 관한 조항은 조세 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간 세무 정보를 교환하는 조항임. 동의안은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고, 한 체약국이 정보를 요청하면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 조세 목적상 필요가 없더라도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안도라는 세율이 낮아 조세피난처로 분류되었던 국가 중 하나인바, 동 규정은 조세 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고 투명한 국제 조세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참고로, 한국과 안도라 간 조세정보를 교환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2016년 12월 21일 발효되었음. 동 협정은 한국과 안도라 간 조세의 결정, 부과 및 징수, 조세채권의 회수 및 집행, 조세사건의 수사 또는 소추에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역외탈세를 규제하기 위한 것임.

아. 혜택에 대한 자격(안 제26조)

동의안 제26조는 협약의 혜택 향유가 거래 및 행위의 주요 목적일 경우 협약의 혜택 부인이 가능함을 명시하였는바, 이는 BEPS 프로젝트⁷⁾의 이중과제방지조약 관련 최소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조세조약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시도를 방지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주권(tax sovereignty)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7)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는 다국적기업들의 국제적 조세 회피전략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G20과 OECD를 중심으로 2012년 시작한 프로젝트로서 100여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음. BEPS 프로젝트는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총 15개의 구체적인 Action Plan으로 이루어져 있음.

자. 조세 징수 협조(의정서)

OECD 모델협약은 조세 징수 협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 규정은 국가 간 세금 징수를 위한 기본적인 협조 의무를 규정하여 세금 징수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세금 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려는 것임.

동의안은 조세 징수 협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대신, 의정서에서 조세 징수 협조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의정서는 조세 징수 협조와 관련하여 향후 안도라가 다른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할 때에 조세 징수 협조 규정을 포함할 경우 동일한 규정이 이 협약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의정서 중 조세 징수 협조에 관한 규정>

3. 조세 징수 협조와 관련하여,

안도라가 이 협약의 서명일 후 다른 국가와 체결하는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정 또는 협약에 따라 그러한 협정 또는 협약에 OECD 모델 협약 제27조(“조세 징수 협조”)와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동일한 규정들이 이 협약의 체약국 간 조세 징수 협조에 적용된다.

다만, 조세 징수 협조 규정을 두는 편이 동의안의 목적인 탈세 및 조세방지 회피를 달성하기에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최근 발효된 한-르완다, 한-튀르키예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조세 징수 협조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등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 징수 협조 규정

을 담아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한 선례가 있음.⁸⁾

참고로, 안도라는 한국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네덜란드와 이중방지 협약을 체결하였는데⁹⁾, 해당 협약에도 조세 징수 협조 규정은 들어가 있지 않으며 대신 의정서에 한-안도라 협약과 동일한 내용을 담았음.

<네덜란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안 의정서>

Convention between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and the
Principality of Andorra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and the
prevention of tax evasion and avoidance

XII. Concerning assistance in the collection of taxes

In the event that, pursuant to a Convention or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concluded with another country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Andorra agrees to include in such Convention or Agreement an article similar to Article 27 of the OECD Model, the same provisions shall apply to assistance in the collection of taxes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of this Convention.

자료: linkeddata.overheid.nl

8) 【참고자료 3】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약 중 조세 징수 협조 규정’

9) 2025. 2. 13. 기준 발효 전임.

4. 종합의견

동의안은 OECD 모델협약에 바탕을 두고,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방지 규정 등 2017년에 개정된 OECD 모델협약의 내용을 포함하되, 한국과 안도라의 세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었음.

한국과 안도라는 경제적인 교류 규모는 작은 편으로, 안도라의 국가 규모를 고려할 때 동 협약으로 인한 투자 유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음.

그럼에도, 이번 이중과세 방지협약을 통하여 대상소득별 과세원칙의 정립, 이중과세의 방지, 분쟁의 상호합의 해결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국과 안도라 간 기업진출 및 상호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조세조약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제도 및 행정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양국 간 조세 협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264

【참고자료 1】 우리나라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현황

※ 2025년 1월 기준 총 99개국 체결(발효 96, 미발효 2, 효력정지 1)

	국가 / 지역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1	동북아시아 (5)	일본	1970.3.3.	개정
			1998.10.8.	
2		중국	1994.3.28.	개정
			2006.3.23.	
3		홍콩	2014.7.8.	
4		몽골	1992.4.17.	
5		대만	2021.11.17.	
6	동남아시아 (10)	미얀마	2002.2.22.	
7		라오스	2004.11.29.	
8		싱가포르	1979.11.6.	개정
			2010.5.24.	
			2019.5.13.	
9		필리핀	1984.2.21.	
10		태국	1974.8.26.	개정
			2006.11.16.	
11		인도네시아	1988.11.10.	
12		브루나이	2014.12.9.	
13		말레이시아	1982.4.20.	
14		베트남	1994.5.20.	개정
			2019.11.27.	
15		캄보디아	2019.11.25.	
16	서남아시아 (5)	네팔	2001.10.5.	
17		방글라데시	1983.5.10.	
18		스리랑카	1984.5.28.	
19		인도	1985.7.19.	개정
			2015.5.18.	
20		파키스탄	1987.4.13.	
21	러시아·CIS (9)	러시아	1992.11.19.	
22		아제르바이잔	2008.5.19.	
23		벨라루스	2002.5.20.	
24		우즈베키스탄	1998.2.11.	개정
			2019.4.19.	
25		우크라이나	1999.9.29.	
26		투르크메니스탄	2015.4.13.	개정
			2019.4.17.	
27		키르기스스탄	2012.12.11.	개정
			2024.12.3.	
28		타지키스탄	2013.7.31.	개정
			2021.11.30.	
			2022.6.11.	

29		카자흐스탄	1997.10.18.	1999.4.9.	
30	미주 (11)	멕시코	1994.10.6.	1995.2.11.	
31		베네수엘라	2006.6.26.	2007.1.15.	
32		칠레	2002.4.18.	2003.7.25.	
33		캐나다	1978.2.10.	1980.12.19.	개정
			2006.9.5.	2006.12.18.	
34		콜롬비아	2010.7.27.	2014.7.3.	
35		파나마	2010.10.20.	2012.4.1.	
36		페루	2012.5.8.	2014.3.3.	
37		에콰도르	2012.10.8.	2013.10.16.	
38		우루과이	2011.11.29.	2013.1.22.	
39		브라질	1989.3.7.	1991.11.21.	개정
			2015.4.24.	2018.1.10.	
40		미국	1976.6.04.	1979.10.20	
41	유럽 (35)	그리스	1995.3.20.	1998.7.10.	
42		네덜란드	1978.10.25.	1981.4.17.	개정
			1998.11.6.	1999.4.2.	
43		노르웨이	1982.10.5.	1984.3.1.	
44		덴마크	1977.10.11.	1979.1.7.	
45		독일	1976.12.14.	1978.5.4.	개정
			2000.3.10.	2002.10.31.	
46		라트비아	2008.6.15.	2009.12.26.	
47		루마니아	1993.10.11.	1994.10.6.	
48		룩셈부르크	1984.11.07.	1986.12.26.	개정
			2012.5.29.	2013.9.4.	
49		리투아니아	2006.4.20.	2007.7.14.	
50		몰타	1997.3.25.	1998.3.21.	
51		벨기에	1977.8.29.	1979.9.19.	개정
			1982.5.21.	1982.5.21.	
			1994.4.20.	1996.12.31.	
			2010.3.8.	2015.12.1.	
52		불가리아	1994.3.11.	1995.6.22.	
53		세르비아	2016.1.22.	2016.11.17.	
54		스웨덴	1981.5.27.	1982.9.9.	
55		스위스	1980.2.12.	1981.4.22.	개정
			2010.12.28.	2018.1.10.	
			2019.5.17.	2020.10.28.	
56		스페인	1994.1.17.	1994.11.21.	
57		슬로바키아	2001.8.27.	2003.7.8.	
58		슬로베니아	2005.4.25.	2006.3.2.	
59		아이슬란드	2008.5.15.	2008.10.23.	
60		아일랜드	1990.7.18.	1991.12.27.	
61		안도라	2023.11.03.	미발효	

62		알바니아	2006.5.17.	2007.1.13.	
63		에스토니아	2009.9.23.	2010.5.25.	
64		영국	1977.4.21.	1978.5.13.	개정
			1996.10.25.	1996.12.30.	
65		이탈리아	1989.1.10.	1992.7.14.	개정
			2012.4.3.	2015.1.23.	
66		조지아	2016.3.31.	2016.11.17	
67		체코	1992.4.27.	1995.3.3.	개정
			2018.1.12.	2019.12.20.	
68		크로아티아	2002.11.13.	2006.9.15.	
69		튀르키예	1983.12.24.	1986.3.27.	개정
			2021.10.22.	2024.7.21.	
70		포르투갈	1996.1.26.	1997.12.21.	
71		폴란드	1991.6.21.	1992.2.21.	개정
			2013.10.22.	2016.10.15.	
72		프랑스	1979.6.19.	1981.2.1.	개정
			1991.4.9.	1992.3.1.	
73		핀란드	1979.2.8.	1981.12.23.	
74		헝가리	1989.3.29.	1990.4.1.	
75		오스트리아	1985.10.8.	1987.12.1.	개정
			2001.5.28.	2002.3.30.	
			2021.6.14.	2023.3.1.	
76	대양주 (4)	파푸아뉴기니	1996.11.23	1998.4.21.	
77		휘지	1994.9.19.	1995.2.17.	
78		호주	1982.7.12.	1984.1.1.	
79		뉴질랜드	1981.10.6.	1983.4.22.	개정
			1997.7.14.	1997.10.10.	
80	중동 (9)	쿠웨이트	1998.12.5.	2000.6.13.	개정
			2007.10.2.	2010.12.27.	
81		바레인	2012.5.1.	2013.4.26.	
82		사우디	2007.3.24.	2008.12.1.	
83		아랍에미리트	2003.9.22.	2005.3.9.	개정
			2019.2.27.	2020.2.29.	
84		요르단	2004.7.24.	2005.3.28.	
85		이란	2006.7.6.	2009.12.8.	
86		오만	2005.9.23.	2006.2.13.	
87		카타르	2007.3.27.	2009.4.15.	
88		이스라엘	1997.3.18.	1997.12.13.	
89	아프리카 (11)	가봉	2010.10.25.	2015.12.2.	
90		나이지리아	2006.11.6.	효력정지	
91		남아공	1995.7.7.	1996.1.7.	
92		수단	2004.9.10.	미발효	
93		알제리	2001.11.24.	2006.8.31.	

94		튀니지	1988.9.27.	1989.11.25.	
95		케냐	2014.7.8.	2017.4.3.	
96		에티오피아	2016.5.26.	2017.10.31.	
97		이집트	1992.12.9.	1994.2.5.	
98		모로코	1999.1.27	2000.6.16	
99		르완다	2023.9.13.	2024.12.19.	

자료: 외교부

【참고자료 2】 안도라 개황자료

□ 일반사항

- 국명 : 안도라공국(Principality of Andorra)
- 수도 : 안도라 라 벨라(Andorra la Vella)
 - 유럽 수도중 가장 고지대(1,023m)에 위치
- 면적 : 약 468km² (서울시 면적의 3/4)
- 인구 : 80,088(2023, World Bank)
- 인종 : 안도라인(47%), 스페인인(24%), 포르투갈인(10%), 프랑스인(4%) 등
- 언어 : 카탈루냐어(공용어), 스페인어, 불어, 포르투갈어
- 종교 : 카톨릭 (99%)
- 통화 : 유로(EURO)
- 국경일 : 3.14 제헌절, 9.8 독립기념일
- 독립 : 1278.9.8
 - ※ 1993.3 헌법제정으로 외교권 등 행사

□ 정치 현황

- 국가형태 : 공국
 - 프랑스 대통령 및 스페인 우르젤교구 주교가 공동 영주(Co-Princes)로서 공동 주권을 행사하나 국내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안도라는 독자적인 외교권 보유
 - 의회민주주의('93.3 헌법 제정 이래)
- 의회구성 : 총 28석, 단원제
 - 7개 행정구역별 4명씩 총 28명으로 구성
- 정부 : 총리 및 11개 부처
- 주요인사
 - 국가원수(공동)
 - 조안 엔릭 비베스 시실리아(Joan Enric Vives Sicília) 우르젤교구 주교
 - 에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 총리 : 사비에르 에스포트 사모라(Xavier Espot Zamora)('19.5 취임, '23.5 연임)
 - 외교장관 : 임마 토르 파우스(Imma Tor Faus)('23.5 취임)

□ 경제 현황

- 주요경제지표
 - GDP : 37억불(2023, World Bank)
 - 1인당 GDP : 46,544불(2023, World Bank)
 - 실업률 : 2.1%(2022, 안도라 통계청)
- 교역 (2022, 안도라 통계청)
 - 수출 : 3.99억 불
 - 수입 : 19.27억 불
- 주요산업
 - 관광업, 농목업, 금융업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수립 : 1995.2.23.
 - 주스페인대사가 안도라 겸임
 - 주스페인대사 : 임수석 대사('24.9~)
 - ※ 안도라 공동공후 앞 신임장제정 필요
- 교역(2023, 한국무역협회)
 - 수출 : 4.9만불(금, 개별소자반도체, 기타정밀화학원료, 집적회로반도체)
 - 수입 : 6.5만불(분석시험기, 주류, 신발, 가방)
- 투자현황(2022) : 없음
- 주요인사 상호방문현황
 - '07.3 Manuel Pons 도시계획장관 방한
 - '07.6 임상규 국무조정실장 방문
 - '08.8 Mateu 외교장관 방한
 - '14.2 여형구 국토부 차관 방문
 - '18.2 Olga 문화체육부장관 방한
 - '23.6 최태원 대통령특사 방문
- 재외동포수 : 5명(2024)

□ 북한과의 관계

- 외교관계 없음

자료 : 외교부, 2024.10.

【참고자료 3】 한-르완다 이중과세방지협약 중 조세 징수 협조 규정

제27조

조세 징수 협조

1. 양 체약국은 조세채권의 징수에서 상호 협조한다. 이러한 협조는 제1조 및 제2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로 이 조의 적용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2. 이 조에서 사용되는 “조세채권”이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정 또는 양 체약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모든 문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와 관련하여 납부해야 하는 금액과 그러한 금액과 관련된 이자, 행정벌과금 및 징수 또는 납세보전 비용을 말한다.

3.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집행될 수 있고 그 시점에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징수를 거부할 수 없는 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징수 목적상 인정한다. 그 조세채권은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다른 쪽 체약국의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적용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법 규정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국이 징수한다.

4. 한쪽 체약국의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이 자국법에 따라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보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채권인 경우, 그 조세채권은 그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납세보전 조치의 목적상 인정한다. 그러한 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에 그 조세채권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 집행될 수 없거나 그 징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 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다른 쪽 체약국은 그 조세채권이 자국의 조세채권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국법의 규정에 따라 그 조세채권에 대하여 납세보전 조치를 한다.

5.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목적상 인정한 조세채권은 그러한 성격을 이유로 그 한쪽 체약국에서 시효의 대상이 되거나 그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조세채권에 적용되는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한쪽 체약국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목적상 인정한 조세

채권은 그 한쪽 계약국에서 다른 쪽 계약국의 법에 따라 그 조세채권에 적용되는 어떠한 우선권도 가지지 않는다.

6. 한쪽 계약국의 조세채권의 존재, 유효성 또는 금액에 관한 청구는 다른 쪽 계약국의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제기되지 않는다.

7.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쪽 계약국의 요청이 이루어진 후 그리고 다른 쪽 계약국이 관련 조세채권을 징수하여 그 한쪽 계약국에 교부하기 전 어느 시점에라도 그 관련 조세채권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 가. 제3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한쪽 계약국의 법에 따라 집행될 수 있고 그 시점에 그 한쪽 계약국의 법에 따라 그 징수를 거부할 수 없는 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는 그 한쪽 계약국의 조세채권, 또는
- 나. 제4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한쪽 계약국이 자국법에 따라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보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한쪽 계약국의 조세채권

한쪽 계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사실을 다른 쪽 계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즉시 통보하고, 그 한쪽 계약국은 다른 쪽 계약국의 선택에 따라 요청을 중단 또는 철회한다.

8.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의 규정은 한쪽 계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가. 그 한쪽 계약국 또는 다른 쪽 계약국의 법과 행정 관행에 상충되는 행정 조치의 수행
- 나. 공공 정책(공공 질서)에 반할 수 있는 조치의 수행
- 다. 다른 쪽 계약국이 사안에 따라 자국의 법 또는 행정 관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징수 또는 납세보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협조의 제공, 또는
- 라. 그 한쪽 계약국의 행정적 부담이 다른 쪽 계약국이 받게 되는 혜택과 명백하게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에 협조의 제공